

의안번호	제 2020 - 18호
의 결 연 월 일	2020. 7. 13. (제103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자문위원 위촉	
1. 개요	2
2. 신임위촉	2
3. 신임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2
4. 자문위원 명단	3
III. 양형위원회 제12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1. 개요	4
2. 참석 현황	4
3. 회의 내용	4
4. 자문의견 요약	
가.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	4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 착수 여부	7
다. 양형위원회의 미래와 과제	7
IV.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1. 개요	8
2. 추진 경과	8
V.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1. 개요	9
2. 추진 경과	9
VI.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10

2. 관련 규정	10
3. 의견수렴 계획	10
4. 시행 일정	14

VII.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및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가. 면담	15
나. 접수 의견서 내용	15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가. 개요	21
나. 회신 완료 접수의견	21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	24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25
나. 민원 우편	28

□ [별지] [신임 자문위원 프로필]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34차	2020. 6. 29. 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3개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유형 분류 방안○ 강도 범죄,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방안

II. 자문위원 위촉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방법 이외에도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을 비롯한 양형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자문위원단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전문가로 구성

2. 신임위촉

- 김영순, 석인선, 이숙진 위원을 2020. 7. 2.자로 각 신임위촉

3. 신임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시 : 2020. 7. 2.(목) 16:00
- 장소 : 대법원 본관 1601호
- 참석 범위 :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 위촉대상자 : 김영순, 석인선, 이숙진 위원

4. 자문위원 명단

분야	성명	경력	최초위촉일
학계	문채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 1. 7.
	고문현	승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8. 12. 10.
	이숙진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 7. 2.
	오미영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4. 3. 10.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 12. 10.
	홍은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14. 3. 10.
	장영민	(前)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 12. 10.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 8. 21.
	석인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 7. 2.
	서창록	사단법인 휴먼아시아 대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17. 8. 21.
언론계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14. 3. 10.
	변상욱	YTN 앵커	17. 8. 21.
시민, 사회단체	김자혜	(前)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14. 3. 10.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이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17. 8. 21.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0. 7. 2.

III. 양형위원회 제12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1. 개요

- 일 시: 2020. 7. 2. (목) 16:00 ~ 18:11
- 장 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 현황

-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 자문위원 12인(고문현, 고태수, 김세형, 김영순, 김자혜, 서창록, 신혜수, 오미영, 이상수, 이숙진, 장영민, 홍은희)

3. 회의 내용

-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 수정 여부, 양형위원회의 미래와 과제
- 자문의견 청취

4. 자문의견 요약

가.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

(1) 쟁점

-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로 들지, 감경요소로 둔다면 판단 기준 또는 정의 규정을 들지 여부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인자로 들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 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할지 여부
-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두어야 할지 여부
-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개수 차이에 대한 의견

(2) 자문의견

(가) '진지한 반성' 관련 사항

- 감경요소로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 내심의 문제이므로 법관이 이를 정확히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
 - 감경요소에 해당한다면 누구든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

게 될 것임. 진지한 반성을 한다면 자신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고, 양형요소에 없더라도 법관이 판단하기에 진정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적절히 양형에 반영하면 될 것임

-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감형을 받기 위해 기술을 부리는 것에 불과하고, 정신감정이나 심리감정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감경요소로 둬야 타당하다는 의견

-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죄를 뉘우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제출 유무나 개수 등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진지한 반성에 관한 감경인자 배제 여부는 비단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요소를 없앨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엄격한 기준을 둘 필요가 있음

○ 기타 의견

- 진지한 반성이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통계분석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
- 판결문에 구체적인 반성 요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

(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관련 사항

○ 감경요소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둘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 있음을 오히려 가중요소로 두어야 함
-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가정과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암수범죄가 많으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감경하는 것은 부당함

○ 감경요소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 형사처벌 전력을 가중요소로 둔다는 것은 한번 처벌받은 과거 전력을 이유로 다시 처벌하는 것이어서 이중 처벌 문제가 있음

○ 기타 의견

- 형사처벌 전력과 재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 처벌불원

○ 감경요소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

-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외부에 흘려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신고했다'는 선입견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 부작용이 컸음. 친고죄를 폐지한 취지를 고려하여야 함

○ 특별감경요소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

-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 전보를 가장 바랄 것이므로, 피해자가 빠르게 피해를 떨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두어야 함. 이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측면도 있음

○ 일반감경요소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

- 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과는 별개로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는 존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형량 범위를 정하는 특별감경인자보다는 일반감경인자가 적절해 보임
- 처벌불원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할 경우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개입(피해보상)할 여지가 없어지므로 감경요소로 두어야 하고, 2차 피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함

(라) 성범죄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개수의 차이 문제

○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개수 차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

- 개수의 불균형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재 성범죄의 양형인자와 양형요소 개수 불균형은 오랜 기간 판단 결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인위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할 문제는 아님
-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범죄에 비해 가중요소가 많고, 가중영역에서의 선고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음

○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개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감경요소는 적고 가중요소가 많은 상황에서는, 실제 처벌되는 범주는 대체로 가중 영역에 치우칠 수밖에 없음. 그런 경우 기본 영역만 놓고 보자면 오히려 다른 범주의 기본 영역보다 권고 형량 범위가 낮게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 성범죄에서는 가중 영역이 기본 영역화 되기 때문임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 착수 여부

(가) 쟁점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착수할지, 착수한다면 양형위원회와 전문위원단의 여력을 고려하여 후반기 작업 중 어느 것을 조정할지 여부

(나) 자문의견

○ 즉시 수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

- 산업현장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되는 사례는 적고, 또한 기업이 처벌되지 않고 실무 담당자만 처벌되는 경우가 많음. 기업주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어야 하고, 입증책임 문제도 개선되어야 함
- 우리나라가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 타이들을 가지는 이유는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므로 조속히 양형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람
- 7기 양형위원회의 다른 과업을 조정해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착수함이 타당

○ 즉시 수정 작업에 착수하기 보다는 다소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 강한 처벌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음. 면밀한 통계분석이 필요함

다. 양형위원회의 미래와 과제

- 정기 세미나 등을 통해 양형 정책을 설정하여야 함. 통계정보 공유와 세미나를 통한 분석으로 거시적인 정책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IV.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양형기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양형위원회 제102차 회의에서 의결된 『성범죄 중 균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관보 게재를 통하여 공개하였음

2. 추진 경과

- 2020. 5. 18. 양형위원회 제102차 회의 : 성범죄 중 균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20. 6. 1. :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 의뢰 공문 시행
- 2020. 6. 5. : 양형기준 관보 게재

(<http://gwanbo.mois.go.kr>)

V.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양형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양형기준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양형기준 개선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최종 의결된 성범죄 중 균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추진 경과

- 2020. 6. 5. : 홈페이지 게재 의뢰(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시행일	범죄군	게재 경과
2020. 7. 1.	성범죄 중 균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완료

VI.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 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 의견수렴 계획

가. 대상 기준안

- 제103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마약범죄, 강도범죄)

나.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보 건 복 지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7		법 무 부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8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9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0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11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2		연 구 기 관	대 한 범 죄 학 회
13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4	한 국 마 약 범 죄 학 회		사무국장
15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6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7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8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	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간사
21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총무간사
2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총무간사
23	유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24		대한법무사협회	사무총장
25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7		한국범죄방지재단	사무총장
2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29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0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3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33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34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다.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법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2	사법부	대법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연번	구분	기관	비고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행 정 부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9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0	연 구 기 관	대 한 범 죄 학 회	사무국장	
11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2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3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4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5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6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17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18		한 국 형 사 소 송 법 학 회	총무간사	
19		한 국 형 사 판 례 연 구 회	총무간사	
20		유 관 기 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1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2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4	한 국 범 죄 방 지 재 단		사무총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25	유 관 기 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2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7	시 민 단 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사무국장
28		참 여 연 대	사범감시센터
29		한 국 Y M C A 전 국 연맹	사무총장
30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20. 7. 17. ~ 8. 17.

○ 의견조회 취합 : 2020. 8. 18.

※ 의견수렴 결과는 의견수렴 후 해당 안건의 양형위원회 회의 시 보고 예정

VII.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및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가. 면담

- 일 시: 2020. 6. 3. (수) 16:00 ~ 16:30
- 장 소: 양형위원회 위원장실(대법원 1501호)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산재예방정책과장
 - 양형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 면담 내용
 - 고용노동부 측에서 아래 의견서를 제출(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접수한 내용과 동일)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의 문제와 수정 요청

나. 접수 의견서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양형기준 조정 요청

1. 추진배경

-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 특히 최근 전부개정 산안법(‘20.1.16. 시행)에서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음

[전부개정 산안법상 처벌 강화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 시 :
(종전)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현행) 5년 내 재범시 1/2 까지 가중
- ** 법인에 대한 벌금 : (종전) 1억원 이하 → (현행) 10억원 이하

- 다만 실제 신고 형량은 낮은 수준에 그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미온적 처벌이라는 지적
 -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산안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이 주장되었으며,
 - * “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바라는 욕구만큼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현실화 될 필요 있음”(‘18.12월, 개정 산안법 상임위 의결, 한정애 의원)
 - “양형기준 강화를 통한 적정 형량 적용이 중요…개정 산안법 법정형 상향의 실효성 확보 위해 사법부의 엄격한 처벌규정 적용 필요”(‘19.10월 국정감사, 설훈 의원)
 -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개선의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

[양형기준 개선 의견]

- ❖ “양형이 어려운 사람에게 엄격하고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 오히려 관대한 경향, 건설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양형기준 개선 등 포함 필요”(MP, ‘20.5.11. 주례회동)
- ❖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법원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 필요”(총리, ‘20.5.21. 현안조정회의)
- ❖ “13년부터 5년 동안 산업재해 책임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벌금 액수도 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음”(YTN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벌 현황

□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형량

- '13~'17년간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형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이 86명(2.93%),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 선고유예 50명(1.71%)임

* 하급심 처리 사건 3,405건 중 1,714건 판결문 기록조사 연구용역('18년)

- 징역형과 금고형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

구분	징역형	금고형
6개월 미만	8명 (12.5%)	1명 (4.5%)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명 (46.9%)	13명 (59.1%)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13명 (20.3%)	4명 (18.2%)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7명 (10.9%)	4명 (18.2%)
2년 이상	6명 (9.4%)	-
합계	64명 (100%)	22명 (100%)

- 벌금형의 경우 평균 부과 금액이 자연인은 420.66만원, 법인은 447.95만원임

구분	자연인	법인
1백만원 미만	121명 (7.2%)	87개소 (7.3%)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781명 (46.5%)	556개소 (46.6%)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651명 (38.8%)	457개소 (38.3%)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23명 (7.3%)	87개소 (7.3%)
3천만원 이상	3명 (0.2%)	7개소 (0.5%)
합계	1,679명 (100%)	1,194개소 (100%)

□ 화재폭발 사고 시 형량 부과

- 주요 대형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 부과

일자	사업장명	재해개요	재해자수	적용법조	형량
'08.1. 7	코리아냉장	○ 냉동창고 설비 공사 화재	(50명) 사망40명 부상10명	○ 종전 산안법 제23조 (안전조치, 화재위험작업 등)	1. 개인: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 2. 법인: 벌금2천만원
'12.8. 13	GS건설(주)	○ 전기 스파크로 단열재화재	(13명) 사망4명 부상9명	○ 종전 산안법 제23조 (안전조치, 경보용 설비 등)	벌금 15백만원(과실치사)
'13.7. 26	삼성엔지니어링(주)	○ 물탱크 누수여부 확인 중 폭발	(15명) 사망3명 부상12명	○ 종전 산안법 제23조 (안전조치, 구축물 폭발위험 예방 등)	1. 개인: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2. 법인: 벌금5천만원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조사

[조사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 (대상·방법) 일반국민 1,000명, 노사단체 임원 100명 대상 설문조사('19.8월)
- ◆ (조사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적정성, 양형기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관련 양형기준의 적정성 등

□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강화 필요성 인식

- (처벌규정 강화 필요성) 일반국민, 노동자단체, 경영자단체 모두 산안법상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

* (일반국민) ■긍정 71.1% ■부정 9.9% ■보통 19.0%
(노동자단체) ■긍정 70.8% ■부정 8.8% ■보통 20.4%
(경영자단체) ■긍정 48.0% ■부정 22.0% ■보통 30.0%

- (처벌의 엄격성·일관성) 일반국민과 노동자단체 뿐만 아니라 경영자단체에서도 법 위반 시 처벌의 엄격성과 일관성이 낮다고 평가

* (처벌 엄격성-부정) ■일반국민 79.9% ■노동자단체 82.1% ■경영자단체 57.6%
(처벌 일관성-부정) ■일반국민 79.1% ■노동자단체 79.5% ■경영자단체 61.0%

□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적정성에 대한 인식

- 양형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하향 필요 의견보다 높음

* (질문지)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징역 6월부터 1년6월 까지의 범위’ 내의 형량을 권고, 이러한 양형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국민) 부적정: 58.9%(상향 필요 91.7%, 하향 필요 6.8%)
(노동자단체) 부적정: 70.3%(상향 필요 92.9%, 하향 필요 2.4%)
(경영자단체) 부적정: 40.0%(상향 필요 67.3%, 하향 필요 26.9%)

-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벌금 7백만 원의 형을 선고한 가상의 사례*의 경우 양형기준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높음

* (사례) A(W개발)는 작업현장에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미설치하였으며, B(W개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미흡 → B가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사망

** (일반국민) 부적정: 75.7%(상향 필요 89.3%, 하향 필요 4.4%)
(노동자단체) 부적정: 74.5%(상향 필요 92.2%, 하향 필요 2.2%)
(경영자단체) 부적정: 43.4%(상향 필요 76.9%, 하향 필요 19.2%)

4.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 및 조정 방향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양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미이행치사죄에 대하여만 과실치사상범죄군 중 한 유형으로 분류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과실치사	-8월	6월 - 1년	8월 - 2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6월	4월 - 10월	8월 - 2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

○ (독립 범죄군) 산안법 위반은 높은 범죄 발생빈도와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에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분류하고

- 안전보건조치미이행 치사죄 유형만 규정*

*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독립 범죄군으로 편성 → 강제근로, 임금 등 미지급 유형과 세부적인 구성요건으로 양형기준이 규정되어 다양한 중요 범죄유형을 규율

○ (권고형량)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 산재사고를 개인범죄인 업무상과실치사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법정형 대비 양형기준이 낮음

* <법정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업무상과실치사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양형기준 권고형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기본 6월~1년6월 ▪ 감경 4월~10월 ▪ 가중 10월~3년6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 8월~2년 ▪ 감경 4월~10월 ▪ 가중 1년~3년

□ 양형기준 조정 방향성

i) 그간 양형위원회에서 범죄 발생 빈도가 높거나 사회적 중요성 높은 범죄에 대해 독립된 범죄군을 설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된 범죄군으로 설정 필요

ii) 기업 등이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고형량 범위의 상향 조정 필요

iii) 기업범죄적 성격인 산안법 위반사건의 효율적 제재를 위하여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필요

□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현황

-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에서 산업 안전보건 관련 조치의무 위반행위(제33조)와 벌칙을 규정(별표 3A)
 - 우리나라 산안법 대비 자유형(징역형, 금고형)은 다소 낮은 수준(2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상한이 없는 것이 특징

[벌금형 부과 현황]

- '17-'18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당 평균 벌금액은 14만 7천 파운드(한화 약 2억, 유죄판결 선고 493건/벌금 총액 7억2천6백만 파운드)
- '16년에 변경된 양형지침에서 '벌금액은 반드시 경영진 등이 산업안전 관련 법률 준수 필요성을 가지도록 회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징벌적이고 충분해야 한다'고 정함에 따라 벌금액 급증
 - * ('14-'15) 평균 29,197 £ → ('15-'16) 57,735 £ → ('16-'17) 125,902 £ → ('17-'18) 147,292 £

- 법인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07)을 제정하여 기업 등의 운영 내지 조직방법의 실패* 및 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기업에게 책임 부과
 - * 운영실패란 기업의 내부에 적절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기업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여부 등으로 판단
- <산안법 위반 사례> ① 과거 유사한 사고(2건)가 있었음에도 자체 안전점검 미 실시 및 안전사고방지조치 미흡에 따른 크레인 점검 중 사망사고에 대해 벌금 140만 파운드(한화 약 21.5억, '18년 기준) 선고
- ② 무자격 하청업체가 야기한 사망사고에 대해 하청업체는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30만 파운드(한화 약 5억, '15년 기준), 하청업체 대표는 과실치사 및 산안법 위반으로 징역 20개월 선고
 - 산안법 위반으로 원청업체는 벌금 7만5천 파운드(한화 약 1.3억, '15년 기준), 원청업체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선고
- <법인과실치사법 위반 사례> 안전조치 지침 위반, 안전감시자 미 배치, 사고 후 적정조치 미흡 등 사업장의 안전시스템 위협에 의한 사망사고 시 벌금 38.5만 파운드(한화 약 6.7억, '11년 기준) 선고

[영국의 양형기준]

- 근로자의 산재 상해·사망사고에 관하여 ①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처벌대상: 개인 및 기업)과 ②법인과실치사법 위반사건(처벌대상: 기업)으로 구분하여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인 또는 기업의 위반에 대한 '과실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유형을 판단

피해의 정도			
	Level A	Level B	Leve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 요구 해결을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장애 · 수명의 상당한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vel A보다는 덜한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일상생활 또는 직장 복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영구 또는 회복불가능 상태 	Level A 또는 B에 속하지 않는 기타 상태
위험성 매우 높음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위험성 중간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위험성 낮음	유형 3	유형 4	유형 4(최저)

- (개인) 유형에 따라 자유형 또는 벌금형의 형량 기준을 정하였고, 위반의 경중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최소 40시간, 최대 300시간) 또는 외출제한 명령(curfew requirement)(최소 16시간, 최대 12개월)을 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개인)>

피해정도/피해유형		기준	감경/가중
매우 높음	유형1	자유형 1년6월	자유형 1-2년
	유형2	자유형 1년	자유형 26주 - 1년 6월
	유형3	자유형 26주	벌금 유형 F 또는 최고 사회봉사 명령 - 자유형 1년
	유형4	벌금 유형 F	벌금 유형 E - 자유형 26주
높음	유형1	자유형 1년	자유형 26주 - 1년 6월
	유형2	자유형 26주	벌금 유형 F 또는 최고 사회봉사 명령 - 자유형 1년
	유형3	벌금 유형 F	벌금 유형 E - 자유형 26주
	유형4	벌금 유형 E	벌금 유형 D - E
중간	유형1	자유형 26주	벌금 유형 F 또는 최고수준 사회봉사 명령 - 자유형 1년
	유형2	벌금 유형 F	벌금 유형 E 또는 중간수준 사회봉사 명령 - 자유형 26주
	유형3	벌금 유형 E	벌금 유형 D 또는 최저수준 사회봉사 명령 - 벌금 유형 E
	유형4	벌금 유형 D	벌금 유형 C - D
낮음	유형1	벌금 유형 F	벌금 유형 E 또는 중간수준 사회봉사 명령 - 자유형 26주
	유형2	벌금 유형 D	벌금 유형 C - D
	유형3	벌금 유형 C	벌금 유형 B - C
	유형4	벌금 유형 A	조건부 처벌 - 벌금 유형 A

<개인 양형기준의 벌금 유형>

유형	기준	감경/가중
벌금 유형 A	주간소득(weekly income)의 50%	주간소득의 25- 75%
벌금 유형 B	주간소득(weekly income)의 100%	주간소득의 75- 125%
벌금 유형 C	주간소득(weekly income)의 150%	주간소득의 125- 175%
벌금 유형 D	주간소득(weekly income)의 250%	주간소득의 200- 300%
벌금 유형 E	주간소득(weekly income)의 400%	주간소득의 300- 500%
벌금 유형 F	주간소득(weekly income)의 600%	주간소득의 500- 700%

- (기업) 부과하는 벌금형의 액수는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기업의 연매출액에 따라 대기업(연 매출 5천만 파운드 이상), 중견기업(1천만 - 5천만 파운드), 중소기업(2백만 - 1천만 파운드), 초소형기업(2백만 파운드 이하)로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기업)>

(단위: 파운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초소형기업	
		기준	감경/가중	기준	감경/가중	기준	감경/가중	기준	감경/가중
매우 높음	유형1	4백만	260만-천만	160만	백만-4백만	45만	30만-160만	25만	15만-45만
	유형2	2백만	100만-525만	80만	40만-2백만	20만	10만-80만	10만	5만-20만
	유형3	1백만	50만-270만	40만	18만-백만	10만	5만-40만	5만	2만5천-10만
	유형4	50만	24만-130만	19만	9만-50만	5만	2만-19만	2만4천	만2천-5만
높음	유형1	240만	150만-6백만	95만	60만-250만	25만	17만-백만	16만	10만-2만5천
	유형2	110만	55만-290만	45만	22만-120만	10만	5만-45만	5만4천	3만-11만
	유형3	54만	25만-145만	21만	10만-55만	5만4천	2만5천-21만	3만	만2천-5만4천
	유형4	24만	12만-70만	10만	5만-25만	2만4천	만2천-10만	만2천	5천-2만천
중간	유형1	130만	80만-325만	54만	30만-130만	16만	10만-60만	10만	6만-16만
	유형2	60만	30만-150만	24만	10만-60만	5만4천	2만5천-23만	3만	만4천-7만
	유형3	30만	13만-75만	10만	5만-30만	2만4천	만2천-10만	만4천	6천-2만5천
	유형4	13만	5만-35만	5만	2만-13만	만2천	4천-5만	6천	2천-만2천
낮음	유형1	30만	18만-70만	13만	75만-30만	4만5천	2만5천-130만	3만	만8천-6만
	유형2	10만	3만5천-2만5천	4만	14만-10만	9천	3천-4만	5천	천-2만
	유형3	3만5천	만-14만	만4천	3천-6만	3천	7백-만4천	천200	2백-7천
	유형4	1만	3천-6만	3천	일천-일만	7백	백-5천	2백	50-2천

○ (법인과실치사법) 예측 가능성, 위반의 종류 및 경중에 따라 위반 유형 A(피해의 정도 또는 과실이 매우 높음)와 유형 B를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정함

<기업과실치사 및 살인 양형기준>

(단위: 파운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초소형기업	
		기준	감경/가중	기준	감경/가중	기준	감경/가중	기준	감경/가중
유형 A		750만	480만-2천만	3백만	180만-750만	80만	54만-280만	45만	27만-80만
유형 B		5백만	3백만-1250만	2백만	120만-5백만	54만	35만-2백만	30만	18만-54만

□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현황

- (현황)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처벌규정은 위반의 종류에 따라 금전제재와 형사벌칙으로 구분되며, 벌금형을 법 집행을 위한 주요 방법으로 인식하며 법 위반 시 상당한 액수의 벌금 부과

[주요 위반사항 및 처벌]

구분	주요 위반사항		처벌
금전 제재 (과태 료)	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	사업주가 자신의 행위가 위반임을 알고 있거나, 사업장에 위험요소가 존재함을 인지함에도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7만달러 이하의 과태료, 단, 고의로 위반 시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5천달러 이상 부과
	중대한 또는 경미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장애 야기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 위험성을 사업주가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경미) 안전보건과 직접적 관련 있으나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장애 일으킬 우려 없는 경우 	7천달러 이하의 과태료
형사	고의적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병과 가능) 단, 사전에 1회 이상 동일한 사항에 대해 유죄판결 받은 경우 2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

- (주요사례) ①가연성 분진 관리 미흡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고 (사망 5명, 중경상 14명)에 대해 벌금 184만 달러(한화 약 20억, '17년 기준) 선고
- ② 안전방지 시스템 미비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고(근로자 끼임, 절단사고)에 대해 벌금 총 51만 달러(한화 약 5.7억, '17년 기준) 선고

⇒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해 자유형(징역형, 금고형)을 부과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나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부과하여 기업의 인식 변화 유도 등 법 규범력을 확보

장관님-양형위원장님 면담 관련 말씀 참고자료

<인사 말씀>

-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김영란 양형위원장님, 김우수 상임위원님, 그리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형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부는 지난 5월 4일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시다만
 - 위원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망사고 등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면담을 요청드렸음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 '19년 1.15일,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확대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30여년 만에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었음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 시 :
(종전)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현행) 5년 내 재범시 1/2 까지 가중
 - ** 법인에 대한 벌금 : (종전) 1억원 이하 → (현행) 10억원 이하
 - 이는 세월호 사건, 구의역 사고, 김용균 씨 사망 등을 계기로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뒷받침된 결과라 생각함
- 금년 1.16일부터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었으나, 안타깝게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38명의 노동자분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 2008.1월에도 똑같은 사고로 40명이 사망하였는데 사고책임자들은 낮은 처벌을 받았음(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2천만원)
- 그간 국회에서는 법정형 못지않게 실제 양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언론에서도 양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노동계에서는 더 나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 현황>

- 현재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16년에 제정되었다고 들었음
- 연구용역을 통해 '13~'17년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처벌이 낮은 수준이었음
 - 징역형과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86명이고,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이 52명으로 가장 많았음(이 기간 매년 평균 사고사망자는 950명 이상임)
 - 아울러 산안법 위반 시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고(57.2%), 평균 벌금액은 4백만원 수준임(자연인 420만원, 법인 447만원)

<산안법 위반 시 양형기준에 대한 우리부 검토사항>

- 산안법 양형기준에 대한 우리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 ① 먼저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하여 양형기준을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림
 - i) 현재 양형기준은 '16년 제정되어 '19년 전부 개정된 산안법의 처벌 강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 ii)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엄중해져, 대량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 iii) 산재사고는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등으로 인한 기업범죄적 성격으로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는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② 아울러 산안법 위반 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을 검토해주시길 바랍
 - i) 산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고
 - ii) 산안법 위반은 기업범죄적 성격이 있고 기업(법인)에 대한 제재수단은 벌금형이 유일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며
 - iii)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10억원(종전 1억)으로 대폭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생각됨

[자문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0.5.28.(목) 10:30~12:00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 (참석자)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범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권혁 교수(부산대), 전형배 교수(강원대), 이진국 교수(아주대)

□ 독립범죄군 설정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할 필요성은

- i) 개발시대와는 달리 안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특히 대량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 ii) 산안법 위반은 안전관리시스템 부재 등 기업범죄적 성격으로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는 범죄의 성격이 다르며
 - iii)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미이행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의 양형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안법 위반 범죄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군의 일부 유형으로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
- ⇒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 범죄군으로 분류하여 세부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세부 범죄유형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

□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필요

○ 현재 양형기준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권고형량 범위 등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선거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군의 벌금형 양형기준 없음)

- i) 산안법 위반사건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으며
 - ii) 기업범죄적 성격인 산안법 위반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제재수단은 벌금형이 유일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 설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고,
 - iii) 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벌금형의 상한을 대폭 상향(1억→10억)한 개정 산안법(20.1.16. 시행)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 ⇒ 산안법 위반사건의 경우 벌금형의 양형기준 설정 필요

□ 국회

○ 산안법 개정 당시('18.12~'19.1)

- 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바라는 욕구만큼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현실화될 필요 있음(한정애 의원)

○ '19년 국정감사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양형기준 강화를 통한 적정 형량 적용이 중요, 개정 산안법 법정형 상향의 실효성 확보 위해 사법부의 엄격한 처벌규정 적용 필요(설훈 의원)

○ '20.4.29. 이천 화재사고 이후

- 법이 있는데도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이 굉장히 미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음(민주당 노동안전특위)
- 법정 하한을 도입하는 방식, 가중 처벌이 사상자의 수에 따라서 가중되는 방식으로의 법안 재구성 필요, 힘이 없는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떠넘기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 바뀌어야 (한정애 의원)
- 민주당은 다음 국회 개원 즉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해야(5.4, 정의당)

□ 노동계 및 시민단체

- 이천 화재 재발대책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하라(5.6,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 이천 화재 참사는 사회적 타살, 재해기업 처벌 필요(5.1, 안전사회시민연대)
- 더 늦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5.4, 이천 지역 건설노동자 연대회의)

□ 언론보도

- 중대재해 기업주 처벌법 제정 중앙정부에 건의(5.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故 노회찬 의원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있었다면 이천 참사 막았다(언론보도 다수)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총 200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0.4.7.~4.19.(21)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2	2020.4.19.(1)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
3	2020.4.9.(1)	○ 엄중한 처벌로는 성폭력 없는 사회가 실현되지 않으므로 디지털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반대한다는 내용
4	2020.4.16~4.19.(6)	○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5	2020.4.19.(3)	○ 디지털성범죄자 엄중한 처벌 요구
6	2020.4.7.~4.19.(155)	○ 성착취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촉구 및 양형기준 강화
7	2020.4.19.(3)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귀하께서 요청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가중처벌과 그 구체적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엄벌주의의 문제점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우리나라 성범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0. 4. 20.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101건)

- ▶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0.4.20.(101)	○ 디지털성착취물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0. 4. 27.까지 총 4건)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0.4.2.(1)	○ 조세범죄 양형기준 강화와 벌금형 제도 개선요구
2	2020.4.20.(1)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3	2020.4.22.(1)	○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생각된다는 내용
4	2020.4.27.(1)	○ 엄벌주의로 얻는 범죄예방효과 보단 치안유지 인력의 충원이 범죄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내용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4. 02. 접수번호 : 2AA-2004-0051415)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나라 조세범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조세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벌금형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4. 22. 접수번호 : 2AA-2004-0437371)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나라 성범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4. 22. 접수번호 : 2AA-2004-0491063)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3. 13. 접수번호 : 2AA-2004

-0575556)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엄벌주의의 문제점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의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0. 6. 2.까지 총 4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0.5.11.(1)	○ 2020. 5. 11. 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 제2020-2호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각 호의 표 '감경·기본·가중' 형량 표기를 국가표준과 어문규범의 규정에 따라 띄어 쓰자는 의견
2	2020.5.24.(1)	○ N 변방 관련자들의 엄한 처벌에 동의하나, N 변방 사건은 드문 사례로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
3	2020.5.28.(1)	○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는 없음으로 대법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
4	2020.6.2.(1)	○ 강력범죄의 경우 반성문 제출시 감형사유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

나. 민원 우편

○ 접수 의견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20.5.10. 2020.6.11.	○ 마약, 절도, 사기,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을 보내달라는 내용
2	2020.5.11.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병역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및 영업, 사기죄, 특정경제법, 상습사기죄, 도박죄, 과거 양형기준, 집행유예기준을 보내달라는 내용
3	2020.5.20.	○ 민원인은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41개 범죄의 양형기준 책을 보내달라는 내용
4	2020.5.25.	○ 민원인은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형사 판결문의 양형기준표를 보내달라는 내용
5	2020.6.11.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30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선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감리 등 용역의 경우 공사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서 금액을 산정하기에 대부분의 용역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상당하여 전체 발주 사업 중 공개경쟁 입찰 공고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기에 특정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폐단이 사라지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30조의 내용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모든 업체가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 시행령의 개정의견을 제출 함
6	2020.6.1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사고후 미조치), 보호감찰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양형기준을 보내달라는 내용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가 무슨 적용의 법조항인지 문의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절도, 마약,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양형기준 자료 중 도박죄, 병역법관련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경제법상의 어떠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요청하는지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현재 시행중인 양형기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매매범죄, 사기죄 양형기준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기준 책자는 재판 실무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수량만을 발간하고 있으며, 별도 판매나 제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는 양형기준 범위를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기준 책자는 재판 실무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수량만을 발간하고 있으며, 별도 판매나 제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

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30조의 내용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모든 업체가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의 의견을 주셨으나, 우리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보호관찰법위반의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귀하가 요청하신 양형기준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그 외의 문의사항은 양형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신임 자문위원 프로필

	성 명	김 영 순
	직 업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사무국장 연석회의 대표 ▶ 2005. 사)대구여성회 부설 ‘힘내’ 상담소장 ▶ 2006.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 2006. 사)대구여성회 성매매 여성인권센터 대표 ▶ 2008. 사)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2010.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2013.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지역정치위원장 ▶ 2017. 한국여성단체연합 12대 공동대표 ▶ 2020. [現] 한국여성단체연합 13대 상임대표 		

신임 자문위원 프로필

	성 명	석 인 선
	직 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미국 플로리다대 로스쿨 LL.M.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2009.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2010.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장 ▶ 2010.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2010.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 201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 2014.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처장 ▶ 2017. [現]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임 자문위원 프로필

	성 명	이 숙 진
	직 업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박사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인천발전연구원 환경사회연구실 연구위원 ▶ 2003.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200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략사업센터 부교수 ▶ 2007.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 2010.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 2010.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통합연구소 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201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2016.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2017. 여성가족부 차관 ▶ 2019. [現]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